공무국외여행 활동개요서(출장보고서)

1. 여행기간 : 2016년 5월 8일(일) - 13일(금), 5박6일

2. 여 행 자 : 김원철 책임연구원, 김형철 책임연구원

3. 여 행 국 : 일본

4. 방문기관: 돗토리지방경찰서, 리쓰메이칸대학, Fujitsu 본사, 자동차안전운전연

구센터, Pacific consultant

5. 소요예산 : 5,271,100원

Ŧ	보 분	산출내역	소요예산(2인)
현지 체재비	일 비	35달러×6일	210달러×1,150원×2인=483,000원
	숙박비	166달러×2일(가등급, 도쿄) 120달러×3일(나등급, 도쿄 외)	332달러×1,150원×2인=763,600원 360달러×1,150원×2인=828,000원
	식 비	107달러×3일(가등급, 도쿄) 78달러×3일(나등급, 도쿄 외)	321달러×1,150원×2인=738,300원 234달러×1,150원×2인=538,200원
	계		3,351,100원
교통비	항공권(변경)	인천→돗토리, 동경→인천	500,000원×2인=1,000,000원 (※실비, 영수증 제출)
	현지 지역간 이동	돗토리 → 교토(또는 오사카) 교토(또는 오사카) → 도쿄	200,000×2인=400,000원 200,000×2인=400,000원 (※실비, 영수증 제출)
여행보험료		6일간	60,000원×2인=120,000원 (※실비, 영수증 제출)
합 계		_	5,271,100원

6. 주요활동내역 :

1. PPLT(보호/비보호 좌회전) 신호운영 사례

- 보호/비보호좌회전(PPRT:Protected/Permitted Left Turn) 신호운영은 일정 시간 동안에는 보호좌회전과 같이 독립된 좌회전 현시가 존재하며, 직진신호 시간에도 대향직진교통류의 갭(Gap) 차간간격이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비보 호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방법이다.
- 보호/비보호좌회전 개념은 대향직진차량의 간격을 이용하여 비보호좌회전 하는 방식이며, 대향직진이 많은 것에 대해 일부 보호좌회전 시간을 부여하여 보호/비보호좌회전을 겸용으로 이용하는 형태이다.
- 대향직진교통류의 도착이 불규칙하고 간격이 클 경우에 좌회전할 수 있는 시 간이 충분하여 교차로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, 대향교통량이 많으면 독립된 현시에만 좌회전이 가능하게 되므로 보호좌회전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



<그림1> 일본 PPLT 신호운영(돗토리 요나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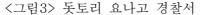


<그림2> 일본 PPLT 신호운영(동경)

2. 고령자 교통안전 사례

- 2009년 「도로교통법」 개정으로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예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.
- 강습내용은 동영상을 통한 교통규칙의 재확인, 동체시력이나 야간시력 측정, 운전지도원 동승 차량운전 및 조언 청취로 구성된다.
- 강습예비검사는 간이인지기능검사라고도 하며, 시간지남력검사(Orientation for Time), 기억회생검사(Cued Recall), 시계그리기검사 (Drawing a Clock)로 구성된다.
- 종전 인지기능검사 제도의 문제점은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고 2·3분류에 해당되면 3년 동안은 그대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.
- 이를 개선하여 2·3분류에 해당하는 고령운전자가 특정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의무적으로 전문의로부터 인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시강습 을 수강하도록 개선하였다.







<그림4>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물(요나고시)

3. 생활도로 자동차 속도규제 사례

- 일본의 생활도로 속도규제는 존 규제 방식이다. 존 규제 방식은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해야 하는 주거계 지구에서 지구 내의 안전성 · 쾌적성 ·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, 면적이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전개한다.
- 면적인 종합교통관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.
 - ① 교통사고의 감소
 - 통과교통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자동차의 통행을 감소시킴으로 써 지구 내의 교통 사고를 줄여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. 또한 지구 내에 목적지를 가진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행속도를 억제함으로써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, 만일 회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.
 - ②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창출
 - 지구 내에서 자동차의 이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도로 네트워크화를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 - ③ 교통공해의 완화 및 해소
 - 지구 내의 자동차 통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소음·진동·배기가스 등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감소되고 정온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.
 - ④ 지구 내 교통의 이동성 확보
 - 노상의 주차위반으로 인한 일반차량의 주행 저해를 해소하고 지구 내에 불필요한 자동차를 배제함으로써 각 주거지 또는 간선도로로의 접근 원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구내 교통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.
 - ⑤ 방범기능의 확보
 - 통과교통의 억제로 인해 지구내로 진입하는 외부자를 줄이고 커뮤니티의 재생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있다.
 - ⑥ 방재공간의 확보
 - 노상의 주차위반으로 인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방해를 해소하고 방재면의 도로 기능을 확보하여 지구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

할 수 있다.

- ⑦ 도로이용 요구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
 - 보행자 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의 정비로 인해 일반 보행자는 물론 고 령자나 장애자 등의 교통약자,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도로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.
- ⑧ 매력과 활력이 있는 지구 형성 추진
 - 교통표지의 수를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거리의 번잡함을 완화하는 등, 지구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성과 매력을 갖춘 지역형성 을 추진할 수 있다 있다. 또한 계획에 대한 주민참가에 의하여 커뮤니 티가 재생되고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진다.



<그림5> 국도 50km/h 속도규제(요나고시)



<그림6> 집산도로 40km/h 속도규제(요나고시)



<그림7> 국지도로 30km/h 속도규제(요나고시)



<그림8> 일방통행도로 20km/h 속도규제(동경)

4. 어린이보호구역/노인보호구역 표지 사례

1) 어린이보호구역

- 보행자와 차량(자전거를 제외)의 통행을 구분하고, 통학통우너 시 유아 아동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.
- 일반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설치하며, 범위는 초등학교와 학원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로 지정한다. 보행자의 통행실태나 도로의 구조,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통행금지, 일방통행, 일시정지, 속도규제 등 교통규제를 시행한다.
- 규제의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며, 전신주나 도로 등에 표시한 스쿨존 표식의 보조표시로 규제 내용을 표시하고 그 내용대로 실제 규제가 이루어지며,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다.

2) 노인보호구역

○ 고령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1986년부터 일본 경시청 주관으로 실버존 시행하고 있으며, 노인의 이용이 빈법한 노인복지시설, 공원, 병원 등 공공장소 주변의 반경 500m 이내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.



<그림9> 어린이 횡단 표지(교토)



<그림10> 실버존 표지(교토)

5. 교통안전표지판 인지성 강화 사례

- 교통안전표지는 도로이용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도로이용자 가 지시된 표지에 따라 통행함으로써 교통상충을 감소시켜 교통안전을 확보 하는 기능을 한다.
-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는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에 의해 오염되고, 비와 바람 등에 의해 파손되어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교통안전표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.
- 고령 운전자가 증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통안전표지가 보다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의 인지성을 강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.
- 도로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델리니이터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반사지 부분의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환기를 높이는 방법과 도로표지의 크기를 키우고, 야간에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인지성을 강화하고 있다.



<그림11> 중앙분리대 시인성 강화(요나고시)



<그림12> 도로표지판 확대 사례(동경)

6. 일본 교통안전정책 (ITS_ETC2.0) 사례

- ETC2.0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 일정간격의 위치정보가 ITS Spot을 통과할 때마다 국토교통성의 서버로 전송되며, 이렇게 수집된 전국의 데이터베이스는 교통상황, 위험지역 등의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.
- 프로브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도로의 여행시간, 여행속도를 측정하거나, 급 브레이크나 급한 핸들조작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분석하여 안전대책을 세 우는 등에 활용한다.
- 혼다와 같은 자동차회사가 수집하는 프로브데이터(자사의 카네비게이션을 장착한 자사 제조차량으로부터 수집)는 구입이 가능하고, 실제로 업무관련이라면 국토교통성 산하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를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이 데이터는 개별차량별 데이터가 없는 한계가 있다.
- 그러나, ETC2.0의 경우는 개별차량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 한 대의 거동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고, 국토교통성의 각 국도사무소에서 도 손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국토교통성 발주의 업무에서는 ETC2.0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다.



7. Big data의 교통정책 활용 사례

-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가 국토교통분야에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통 계획 수립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여기고, 공공교통 활성화를 주제로 2013년 부터 츠쿠바대학의 이시다 하루오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설 치하여 빅데이터의 활용방향과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.
- 2014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동수요의 분석평가기법에 대해서 검토한 뒤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유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.
- 2015년에는 국토교통성 자동차국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지방노선버스회사 의 경영개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. 또한 사업 추진 과 더불어 지자체와 운수사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 활용 매뉴얼도 개 발하고 있다.
- 휴대폰 기지국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이동 실태를 분석하거나, 고령화 가 빠르게 진행중인 츠쿠바시의 츠키자키 지역에 대한 생활교통의 편리성 향 상 가능성 검증, 그리고 후쿠시마시의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과 생활교통 개 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설계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.



8. 자전거 교통안전교육(음주단속 포함) 사례

- 일본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초등학생과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, 의무교육이 아닌 자발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자전거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교통안전의식이 향상됨은 물로 자전거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포창을 수여받기도 한다.
- 자전거 교육의 내용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로부터 실제 커브구간, 직선구간, 철도구간에서의 안전운전 내용과 특히 대형차량 주변을 주행할 때의 안전운전에 대해 현장 체험형 교육을 받는다.



<그림17> 현장 체험형 어린이교통안전 (동경)



<그림18> 자전거 주행 규칙(동경)



<그림19> 자동차 안전운전센터(동경)



<그림20> 자동차 안전운전센터 면담자

-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자전거는 경차에 해당(도로교통법 제2조 1항 11호 해당) 되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.
- 자동차의 음주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이나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.
- 음주 운전의 벌칙은 알콜이 혈액 1㎡중 3mg이상 또는 날숨 1ℓ중에 0.15mg이 상의 음주(술기운) 및 운전위반(도로교통법 제117조2의2의3호)과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 음주 운전 위반(도로교통법 제117조2의 1호)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.
- 자전거 운전의 위험유형이 14개 정도가 제시되었는데,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 3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며 안전교육 비용이 5,700엔에 해당된다.
- 자전거 운행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행동별 벌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.
 - 자전거 음주운전금지 위반: 5년 이하 징역 도는 100만엔 이상 벌금
 - 2명 이상 타는 것 금지 위반: 2만엔 이하 벌금
 - 자전거 타면서 수다 떠는 것 금지 위반: 2만엔 이하 벌금
 - 밤에 자전거 주행시 전조등 켜기 위반: 5만엔 이하 벌금
 - 신호 위반 :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 벌금
 - 일시멈춤 등의 안전표시 위반 :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 벌금
 - 우천시 우산 들고 주행 금지
 - 주행중 휴대폰을 손에 쥐거나 통화행위 금지
 - 주행중 음악 청취 금지 등
 - 좌/우회전, 정지시에 반드시 수신호를 하여야 함





<그림21> 리츠메이칸대학 정문(교토)



<그림22> 자전거 음주단속 홍보물



<그림23> 자전거 신호대기 정지선 (돗토리시)



<그림24> 자전거 전용 지하주차장(동경)